이혼

[대구가정법원 2020. 5. 7. 2020르18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 원고

【피고, 항소인】 피고(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)

【제1심판결】대구가정법원 2019. 12. 18. 선고 2016드단7762 판결

【변론종결】2020. 4. 16.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이유]

】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'나.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'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가사소송법 제12조,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다시 쓰는 부분

「나.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

- 1)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, "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"고 규정되어 있다.
-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, 여기서 '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'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(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). 또한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, 판결의 선고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 · 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다98423 판결, 2018. 8. 30. 선고 2018다229984 판결 등 참조).

- 2)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바,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될 무렵인 2016. 10. 4.부터 2016. 11. 14.까지 사이에 ○○○○대학교△△△△△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2019. 12.경까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-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고는 2016. 8. 4. 이 사건 소 장을 직접 송달받아 이 사건 소가 계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법원에 문의·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, 또 피고에게는 그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조사할 의무가 있었던 점, ②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. 8. 26.에서야 추완이의신청을 하는 등 소장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재판진행 상황을 제때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피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의신청기간을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상균(재판장) 김유경 김대현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